

상장사 · 중소기업의 투명회계 · 적법세금 · 성공경영 정보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중기업
경영관리
의주화

2023/3/1 통권 1612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CEO 에세이 - 이해의원장

CEO는 품질을 경영한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경영관리임직원 재경컨설팅 제안

- 박윤중 회계사 :
-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의 과세 차이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
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해야 함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도착 사
업자 조사
- 부당행위계산부인 (특수관계인의 범위)
-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색션

-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시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로 안분계산함 (p.13)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경제거래활동 개인의 총수입, 원가, 비용, 소득파악신고제도>

개념, 구분	총수입, 대응원가, 비용, 소득현황파악과 신고방법, 서류 등
일반 과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법인 3개월, 개인 6개월 단위), 매출· 매입 세금계산서 전자명세 첨부
겸업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법인 3개월, 개인 6개월 단위)시 면세 매출·매입원가도 신고함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총매출 입금수단별 명세, 비용명세 등)신고, 매년 2/10
자유사업소득자 (개인 주민번호)	소득지급사업자(법인, 개인)가 실적급+주민번호로 3.3% 원 천징수 후 순액지급, 해당 소득자는 자기사업장이 있더라도 사업장 현황신고의 매출액에 불포함(포함하면 중복신고)
정규근로소득자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종속고용 근로제공한 소득, 4대보 험 부담 후 순액수취 연말정산·종결
일용근로소득자	사업자가 일용소득 지급, 일당 15만원 공제 후 6% 세율 원 천징수로 종결, 연말정산 안함
근로자 퇴직소득	정년퇴직, 중도퇴사 시 연도별 공제 + 환산급여 공제 후 일 반세율 원천징수 종결
기타소득	일시, 우발적 소득 : 열거된 것은 60% 필요경비 공제 후 20% 세율(최종 8.8% 원천징수)
양도소득	양도가 - 취득원가 - 장기보유공제한 순양도소득에 일반세 율 적용(예정신고 있음)
종교인소득	근로소득 대신 기타소득으로 분류 : 80% 등 높은 소득 공제 적용 + 일반세율 적용

(안사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제공)

안사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리·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 · 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안
세
재
경
저
널
회
원
용
·
2
0
2
3
년
3
월
1
일
수
·
주
간
제
9
호
·
통
권
제
1
6
1
2
호
·
후
속
·
시
행
령
개
정
안
수
정
사
항
구
독
비
율
3
0
0
0
0
0

주간 안사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612호 / 주간 9호

2023. 03. 01. (수)

· 발행인: 이윤선
· 제작: (주) 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FAX: (02) 718-8565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 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경제거래활동 개인의 총수입, 원가, 비용, 소득파악신고제도	표지
긴급시사해설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의 과세 차이	2
CEO에세이	CEO는 품질을 경영한다	4
세무·회계 상담자문 (남들은 무슨 고민할까?)	-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의	6
	- 스크랩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과 결제내역 결제일자가 다를 경우 문의	7
	- 포워딩업체에서 관세 자체 환급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 무형자산(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연수 적용	
눈에 맞는 절세미인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해야 함	8
매일 절세재무요점	- 상장법인 주식거래 과세 기준	10
	-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11
직장인 Survival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끈	12
최신판례예규 (이런저런 유권해석)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정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법규재산-2612, 2022.08.29)	13
	-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규부가-4332, 2022.08.11)	14
세정뉴스와 해설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인정 편리해진다...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15
마케팅 Tax consulting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시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13
세무정보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16
	-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19
	-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의 범위)	30
	-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45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의 과세 차이



박윤중 공인회계사 (안세회계법인)

- (전)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 (전)국민대 경영대 겸임교수
- 공인회계사·경영학박사(마케팅조세전략, 회계경영학원론)
-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와 서울대 경영대학원 졸업
- 다수우량기업 회계자문(SK증권, 지오다노, 동서그룹 등)

기업승계 · 증여 · 상속자문
기업경영권
양도 · 양수 컨설팅
(829-7575)

개념비교	외국인근로자	내국인근로자
정의, 범위	대한민국 국적자 아닌 외국인 임원 · 직원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주로 거주자)
과세범위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국내소득 + 해외소득 통합과세
특례세율 (조특법 제18조의2)	처음 근로일부터 20년간 근로소득 × 19% 단일세율	일반종합소득 다단계누진세율 (6%-45%) 적용
합산과세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사업 · 이자 · 배당 등)과 합산제외	근로소득 이외 다른소득과 합산 후 세율적용
기술자 감면 (조특법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자연 · 이공 · 의학 · 엔지니어 등)의 근로소득 일반 소득세 × 50% 감면	일반종합소득 다단계누진세율 (6%-45%) 적용
재입국 적용	과세특례 적용하의 출국 후 재입국시 과세특례 다시 적용함(구해석) 과세특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므로 기존 해석 계속적용은 불분명함	

♣ 외국인근로자가 과세특례 적용받은 후 출국하였다가 재입국 근로하면 18% 단일세율 재적용함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43, 2022. 5. 30.)

[요 지]

외국인근로자가 '14.1.1.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출국하고 '14.1.1.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14.1.1. 이후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음

[답변내용]

외국인근로자 A는 '06년에 우리나라에 최초 입국하여 '06년부터 '07년까지 근무하였고, 출국하였다가 '15년에 재입국하여 '15년부터 '17년까지 내국법인에 소속되어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즉 “경력단절이 발생한 외국인근로자”)로서
-해당 내국법인은 '14.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및 부칙 제59조 규정에 따라 A의 '15-'17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부 회신]

2013년 이전에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2014년 이후 재입국하여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구)「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173호(2014.1.1.), 법률 제12853호(2014.12.23.), 법률 제14390호(2016.12.20.)] 제18조의2제2항의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2014.1.1.이후에 최초로 입국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을 의미하며,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동 규정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CEO는 품질을 경영한다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왜 하필 이제 또 품질인가. 21세기를 살며 기술입국, 하이테크를 외치는 판국에 품질이 웬말인가. 규격검사나 하고 공정관리의 품질이 웬말인가. 그러나 그게 아닌 것 같다.

직업상 최근 10여년간 중국을 자주 왕래했다. 당연히 땅이 넓다보니 자동차를 타고 몇 시간씩 왔다갔다하는데 그 일이 보통 고역이 아니다. 멀쩡하게 생긴 중국산 폭스바겐(Volks Wagen)독일 브랜드의 자동차가 흔해서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폭스바겐이 본토 독일산 폭스바겐과는 판판이다.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오래전 한국의 새나라 택시꼴이다. 그래서 그걸 타고 몇시간 왔다갔다 하다보면 녹초가 된다.

같은 브랜드 폭스바겐인데 왜 독일 본토산과 중국산은 그렇게 다를까?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동차 회사들이 장기적 안목으로 중국에 진출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일 본토보다 더 새 설비로 공장을 차려 생산하는 자동차라는 설명을 들으면 더욱 아리송해진다. 자동차회사 부품 연구원 연구실장으로 있는 가까이 지내는 고교 후배에게 물어본 적도 있다. 독일 설계에 독일 기술감독에 독일 설비에 땅과 사람만 중국인데 왜 차이가 나냐고 말이다. 물론 친구도 중국에 있는 자동차 공장과 산업에 대해 속속들이 연구한 것은 아니나 자동차 전문가로서 대체로 몇가지 귀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첫째, 자동차 산업은 전자, 기계와 화학 등 모든 산업의 총화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부품이 결합되는데 그 부품산업의 '품질'이 본토 독일과 같을 수 없다. 그러니 조립공장의 설비가 제아무리 훌륭하다해도 독일산과 같은 수준이 되는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아무리 기술교육을 받았다고 해도 기계와 결이 삭아 한 몸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오히려 독일에서 구형 설비를 사용하지만 사람의 감각과 손에 익은 망치질이 더욱 정교하고 고품질을 생산하는데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기술도 땀이 들어야 고

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귀한 답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것은 비단 자동차 산업만이 아닐 것이다. 가령 장충동에 유명한 ‘원조 돼지 족발집’의 음식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 앞에 유명한 강원도 할머니 손맛의 ‘순두부집’ 음식도 그렇다. 요리책을 보며 유난을 떨어대지만 어머니의 독배기 된장찌개 맛보다 못한 갓 시집온 젊은 와이프 찌개 맛도 비슷한 사례인 듯하다.

여하간에 품질이란 단순한 게 아닌 것 같다. 규격검사, 불량품질검사나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단순한 편견과 선입견을 없애야겠다. 품질은 본질적으로 기술을 실천하는 'Q(Quality)'라 할 수 있으므로 기술을 완성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현장의 실천과정에서 피드백(feed back)되면서 기술을 돈구는 'Q'다. 그래서 품질과 기술은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Win-win)적 관계다. 따라서 품질은 21세기 미래 한국의 생존 전략적 키워드(Key word)다. 그리고 지향점이다. 더구나 한국의 현실을 냉철하게 꿰뚫어 보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원천기술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기술의 열매를 따기 위해서는 대규모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다.

다시 강조하거니와 기술도 품질과 결합되어야 아웃풋(output)을 생산할 수 있다. 요컨대 '기술은 연구소, 품질은 현장'이기 때문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2월 17일 (금)	2월 20일 (월)	2월 21일 (화)	2월 22일 (수)	2월 23일 (목)
미	달 러 (USD)	1283.70	1297.70	1295.80	1295.80	1303.80
일	본 엔 (JPY)	957.16	966.34	965.07	960.07	966.67
영	국 파 운 드 (GBP)	1537.29	1561.13	1560.47	1569.73	1570.75
캐	나 다 달 러 (CAD)	953.22	962.40	963.38	957.37	962.29
홍	콩 달 러 (HKD)	163.55	165.42	165.41	165.19	166.17
중	국 원 (CNH)	187.00	188.73	188.49	188.64	188.95
유	로 화 (EUR)	1369.19	1386.72	1384.82	1379.90	1383.07
호	주 달 러 (AUD)	881.58	891.58	895.92	889.05	887.89
싱	가 폴 달 러 (SGD)	960.17	970.39	969.98	966.69	972.37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91.49	292.80	292.47	292.34	293.55

납부불성실가산세 문의

Q 2019년 귀속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를 납부하는데 납부불성실 가산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2.2.14 이전에는 일당 0.025%의 요율, 그리고 그 이후에는 0.022%의 요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①'20.04.01~'22.02.13 → 0.025%, ②'22.02.14~'22.10. 신고일까지 → 0.022%

이 경우 ①, ② 합산하여 신고납부 하면 될런지 아니면 전체 기간(20'4/1~신고일까지)에 대해 0.025%를 적용하면 되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A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424호, 2022.02.15)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영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영 시행 이후 납부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과 2를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스크랩거래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와 결제내역 결제일자가 다를 경우 문의

Q 당사는 스크랩거래를 했고 스크랩매출자입니다.

9월 30일 공급가액 11,056,850원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스크랩매입자측에서 부가세를 포함한 12,162,534원을 입금하여 10월 11일에 송금하여 부가세는 국고에 귀속되고 공급가액만 입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매입자측에서 송금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9월 30일로 안하고 10월 11일로 하는 바람에 당사에서 3분기 기납부세액에서 조회가 안되고 4분기에서 조회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스크랩거래에 대한 가산세가 매출자, 매입자 가산세가 발생하는 상황인지요?

A 공급받은 때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에 전용계좌 등에 입금하여야 하는데, 해당 시점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자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귀사의 경우 매입자측에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수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귀사는 별도의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포워딩업체에서 관세 자체 환급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

Q 당사는 중국에서 A거래처로부터 DDP 조건으로 수입을 하였고 이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어, 세관에 납부를 하였습니다. 불량대체품 발송이기 때문에 모든 비용은 A거래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하였고,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해서 B포워딩업체에서 A거래처로 청구, B포워딩업체에서 당사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자체적으로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당사에서 검토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것같아 문의드립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환급하는것이 타당한가요?

A 거래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한 관세를 귀사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보전받는 경우는 귀사의 의견대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무형자산(소프트웨어)에 대한 상각연수 적용

Q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형자산 내용연수는 얼마로 적용해야 하나요?(현재 4년적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4에는 무형자산의 내용연수에 대해 소프트웨어는 특별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영업권,디자인권,실용신안권,상표권" 등과 같이 5년을 적용하는게 맞는건지, 4년을 적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A 자체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아닌 상용소프트웨어를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이 아닌 비품으로 반영하므로 5년이 기준내용연수이나 4년 또는 6년도 가능합니다.

배당결의 후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해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원천징수 해야 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주주총회에서 배당이 결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되지 않고 지급유보 되는 등 외부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시점을 정하여 배당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의제시키고 과세의무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배당소득 지급의제라고 한다.

이렇게 실제 지급사실이 없음에도 특정시점으로 지급을 의제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절히 이행시키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12월말 결산법인들은 다음연도 2월~3월 사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배당을 결의하는데, 여러 이유로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지 못한 법인도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배당 결의일로부터 3개월 되는 날이 지급의제 시기임

법인의 경우 당기순이익이 발생해도 결산이 확정된 후 주주총회에서 결산이익에 대한 소득처분(배당)결의를 해야만 배당이 가능한데,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소득처분(배당)이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않은 경우는 그 처분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어 세법상의 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즉, 배당의 경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반복되지 않을 것이며, 상법에서도 배당금을 1개월 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배당 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지급의제시점을 두어 세법상의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 소득세법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따른 배당 또는 분배금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결정된 처분에 따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배당소득 지급의제시기(결의일부터 3개월)에 원천징수 의무 성립함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실지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 후, 그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하지만, 배당을 결의하고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에 의하여 배당을 결의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 의무가 성립된다.

따라서 2023년 2월(또는 3월) 중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아직 배당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결의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인 5월(또는 6월)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다음달인 6월10일(또는 7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을 추후 임시주총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고,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3개월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역시 3개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소득세제과-277, 2005.12.16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외국법인주주는 실제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함

개인주주(외국인 개인주주 포함)에게는 배당소득 지급의제 규정이 적용되므로, 결의일로부터 3개월 경과시점에 소득세법이나 또는 해당 외국인 거주국가와의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신고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게는 지급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배당소득 지급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지급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배당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통칙 98-137-1[외국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 및 부동산 소득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때의 그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배당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월

상장법인 주식거래 과세 기준

구성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지분율	1% 이상	2% 이상	4% 이상
시가총액	10억원 이상(공통)		

화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세율

중소기업	소액주주	10%(장외거래)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	20%(장외거래)
	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과세표준 3억원 초과 25%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30%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가산세 감면율

구성	감면율					
	90%	75%	50%	30%	20%	10%
수정신고	1개월 이내	1-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6개월~1년 이내	1년~1년 6개월 이내	1년 6개월~2년 이내
기한후 신고	-	-	1개월 이내	1-3개월 이내	3-6개월 이내	-



재개발 주택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 보유세 부과기준

양도소득세 세율

- 1년 미만인 경우 70%
- 1-2년 미만인 경우 60%
- 2년 이상인 경우 6-45%의 일반세율

양도세 비과세 규정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기존주택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양도일 현재 주택 없거나 1주택만 보유 조합원입주권만 보유
- 입주권보유자가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 양도

취득세 규정

- 종전주택 멸실된 경우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4%)
 - 종전주택 멸실되지 않은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과(기본세율 1-3%)
- 준공시 원시취득에 대한 취득세 부과(2.8%)

보유세(6월 1일 기준)

- 종전주택 멸실된 경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
- 종전주택 멸실되지 않은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 · 종부세 부과



인생에서 꼭 필요한 5가지 끈

1. 매끈

까칠한 사람이 되지 마라.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고, 모난 돌은 정 맞기 쉽다.
세련되게 입고 밝게 웃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매너 있게 행동하라.
외모가 미끈하고 성품이 매끈한 사람이 되자.

2. 발끈

오기 있는 사람이 되자.
실패란 넘어 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머무는 것이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이니 어려운 순간일수록 오히려 발끈하라.

3. 화끈

미적지근한 사람이 되지 마라.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어차피 할 일이라면 화끈하게 하라.
눈치 보지 말고 소신껏 행동하는 사람 내숭 떨지 말고 화끈한 사람이 되자.

4. 질끈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실수나 결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다른 사람을 쓸데없이 비난하지 말고 질끈 눈을 감아라.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니 입이 간지러워도 참고,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질끈 눈을 감아라.

5. 따끈

따뜻한 사람이 되자.
계산적인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미가 느껴지는 사람이 되자.
털털한 사람. 인정 많은 사람. 메마르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에게 베풀 줄 아는 따끈한 사람이 되자.

최신 판례 예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임

서면법규재산-2612, 2022.08.29

■ 질 의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지 5년이 경과되어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는 주식 등에 기반해
- 유상증자 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이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장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41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05, 2022.8.1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제7항에 따라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후 그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경우, 그 신주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주가 상장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로서 그 신주를 취득한 자가 당초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Marketing Tax consulting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시
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함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때에 부가령 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 하는 것임

재산세제과-1077, 2022.08.31

■ 질 의

-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는 경우 기준 시점

■ 회 신

일괄 양도하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제6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순금산입방법’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서면법규국조-3584, 2022.04.13

■ 질 의

- 질의법인은 자동차 제동장치, 조향장치, 현가장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회사로 '16~'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중국, 미국, 인도

등에 소재한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관련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여 왔으나, 기존의 '세액공제방식'을 '손금산입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함

질의

-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손금산입방식' 적용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손금산입방법을 택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같은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차감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지 않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서면법규부가-4332, 2022.08.11

질의

- 갑은 을법인의 조세탈루행위에 대하여 과세관청에 탈세제보함
- 갑의 주장에 따르면, 위 탈세제보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탈세제보의 대상이 되는 추정사유

(A) 이외에 별도 추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정사유들을 이유로 과세처분하였고(같은 과세연도에 A, B 발생 전제)

-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을법인은 B추정사유가 위법함을 이유로 불복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위 과세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임

질의

-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정사유(A) 및 별도 추정사유(B)가 확인된 결과 행해진 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B추정사유에 대한 피제보자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탈세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자가 조세탈루에 관한 탈세제보를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에서 탈세제보 대상 추정사유(A) 외에 별도의 추정사유(B)도 확인되어 위 추정사유들을 이유로 행해진 과세처분에 대하여, 해당 피제보법인이 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해외매출채권 대손금 인정 편리해진다...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회수불능 해외매출채권이 있을 경우 해외채권추심기관을 통해서도 대손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현지 거래은행 상공회외소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대손금이 인정됐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건물·부속토지가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이 현행 3.0%에서 3.2%로 조정됐다. 이를 초과해야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 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게 됐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이 신설됐다.

합병법인 등의 자산·부채의 경우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하고, 공통요금·손금의 경우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한다.

국세·관세 환급이자율 연 1.2%에서 2.9%로 인상

국세·관세를 환급받을 때 붙는 환급 이자율이 1.7%포인트 인상된 2.9%를 적용받는다.

해당 이자율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이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개했다.

최근 연도별 환급 이자율은 2016년 1.8%였다가 2021·2022년도에 1.2%로 내려갔었다.

국세·관세 환급가산금은 이번 시행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년부터 적용하되, 부동산 간주임대료는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공매대행 수수료율도 조정된다. 매각 수수료의 경우 매각대금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는 매수대금의 2.4%

로 올라간다.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청각 건조시설이 포함됐다.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 등 대출조건 변경할 때에는 대출증서를 다시 써도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월별 소득자료를 제공하는 사업장 범위에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가 추가된다.

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국세청, 고령자장애인 대상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시행... '122만명 혜택'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신청 대상자에게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 내 자동신청 관련 안내도 포함돼 있으며,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 여부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국세청에서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 및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하다.

국세청을 모바일 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했으며,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 기획재정부, 2023. 2

- 정부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제개편안 후속조치로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발표(1.18.)한 바 있으며,
 - 그간 법제처 심사(1.19.~2.3.), 입법예고(1.19.~2.3.) 및 부처협의(1.19.~1.30.)를 통해 제기된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초 발표한 개정안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 시행령 개정안은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내주에 공포될 예정*입니다.
 - * (21개 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국세징수법, 주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별소비세법, 과세자료법,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인지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교육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영농기자재 등 면세규정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재산세제과(4311~8)
- 금융세제과(4231, 4233, 4236)
- 국제조세제도과(4241~3, 4246)
- 조세법령운용팀(4151~2, 4154)

참고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주요 수정사항
-----------	--------------------------------------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 강화(상증령 §16②)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 영농 종사기간 강화 <input type="checkbox"/> 상속개시일 2년→10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 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input type="checkbox"/> 영농종사기간 조정 <input type="checkbox"/> 2년 → 8년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운용자산 확대(조특령 §93의8)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내용)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상장주식 등 <추 가>	<input type="checkbox"/> 운용자산 추가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내국법인이 발행한 회사채, 국채 및 지방채

< 수정이유 > 청년도약계좌의 투자자산 다양화

3. 법인세법 시행령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시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법인령 §18)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input type="checkbox"/>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추 가>	<input type="checkbox"/> 해외자회사 요건 명확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 병·분할·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 일을 기준으로 판단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의 요건 명확화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법인령 §94⑩)

현 행(당초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인 해외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자회사의 법인세액 ○ 해외자회사가 해외손회사* 배당금에 대해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또는 국외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세액의 50% <p>* 해외자회사가 지분율 25% 이상,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또는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 통해 지분율 25% 이상 보유</p>	<input type="checkbox"/> 해외손회사 요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div>

< 수정이유 >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4. 교육세법 시행령

교육세 과세표준의 범위(교육령 §4)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교육세 과세표준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 추가 <p>* 보험대리점업자는 교육세 과세제외 (현행과 동일)</p>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 수정이유 > 부처협의 결과 반영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친족범위 합리화(국기령 §1의2①)

당 초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촌 → 4촌 이내의 혈족 ○ 4촌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 (추가)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input type="checkbox"/>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범위 축소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padding-left: 5px; margin-left: 2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

< 수정이유 >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로 한정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는 신종 · 지역토착 사업자 조사

- 국세청, 2023. 2

- (조사배경)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일부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이번 세무조사대상자 84명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①)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 (유형 ②)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26명)
 -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허위인건비를 계상한 쇼핑몰 운영자
 - (유형 ③)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유형 ④)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
 -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 (향후계획) 국세청은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초를 유지하면서 위법·불공정행위로 부당수익을 누린 탈세자에 대해 공정·적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세무조사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새로운 업종의 성장과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하고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과세인프라 구축	성실납세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 미디어 창작자, SNS마켓 사업자 업종코드 신설('19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 운영('20년) 온라인 신종업종 세무안내('22년)

- 또한,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 전념하도록 다양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부담 감축	세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편조사 확대('22년 7월) 조사시기 선택제도 도입('23년 하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실시('22년) 가업승계 세무 컨설팅 실시('22년)

- 국민, 기업, 정부가 모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 일부 사업자는 남다른 지위와 제도 인프라 덕분에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의무를 무시하고 지능적으로 탈세하고 있습니다.
 - 일부 유튜버, 플랫폼 사업자는 대중의 인기와 온라인시장 지배력을 통해 높은 수익을 누리면서도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온라인 산업생태계의 경쟁질서와 건전성장까지 저해하고 있습니다.
 - 일부 토착기업과 사주는 지역사회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관급공사를 안정적으로 수주하여 고수익을 올리면서도 세법의 궤도에서 이탈하여 지역공동체의 신뢰라는 무형자산까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의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하여 고소득을 누리는 연예인, 유튜버, 토착사업자는 국민의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나라의 근본인 공정과 준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 이에 탈루혐의가 확인된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 토착 사업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2 세무조사 대상자

- 조사대상자는 ①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②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SNS-RICH, ③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④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4가지 유형입니다.

〈유형별 조사대상자〉

합 계	연예인 등 인적용역사업자	SNS-RICH	플랫폼 및 투자정보서비스업	지역토착 사업자
84명	18명	26명	19명	21명

【분야별 세부 유형】

- ①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소득을 누락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 ① 가족명의 1인 기획사 설립 후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 ②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신고를 누락하고 허위경비를 계상한 운동선수, 게이머
 - ③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 ② 광고수입 또는 물품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는 SNS-RICH
 - ① 유튜브 광고수입 및 후원금수입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 ②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한 쇼핑몰 운영자
 - ③ 업무와 무관한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인플루언서
- ③ 온라인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① 이용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금융·생활정보 제공 플랫폼 사업자
 - ② 투자 컨설팅 수입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 ④ 지역사회 영향력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후 탈세하는 지역토착 사업자
 - ①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사주명으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 ② 자녀지배 특수관계 법인을 세워 이익을 분여한 유통업체

[유형 1]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 18명

- 첫 번째 유형은 대중적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정적 고수익을 누리면서 소득을 탈루하는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입니다.
 - (1인 기획사 활용 소득분산) 가족명의의 1인 기획사를 설립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하며 소득을 탈루한 연예인
 - (국외소득 누락)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게이머와 운동선수
 - (저작권 무상이전) 최근 온라인 콘텐츠의 인기로 소득이 급증하자 인위적으로 법인을 세워 개인보유 저작권을 무상이전하고 소득을 분산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웹툰 작가

[유형 2]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SNS-RICH : 26명

-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입니다.



- (후원금·광고 수입 신고 누락)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유튜브
- (사적경비 변칙처리) 고가 사치품 구매비용과 주택임차료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며 탈세한 인플루언서
- (허위인건비 계상) 화장품, 식품, 의류 판매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쇼핑몰 운영자

[유형 3] 플랫폼 사업자,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 : 19명

- 세 번째 유형은 금융·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코인·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입니다.
 - (수수료 신고 누락) 플랫폼 수수료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고 시스템 개발비용 등을 부당하게 공제 받으며 세금을 회피한 플랫폼 사업자
 - (차명계좌 사용) 주식(코인) 투자 관련 출판·강연 등으로 벌어들인 수입과 투자자문 수수료를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 누락한 투자정보서비스업자

[유형 4]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 2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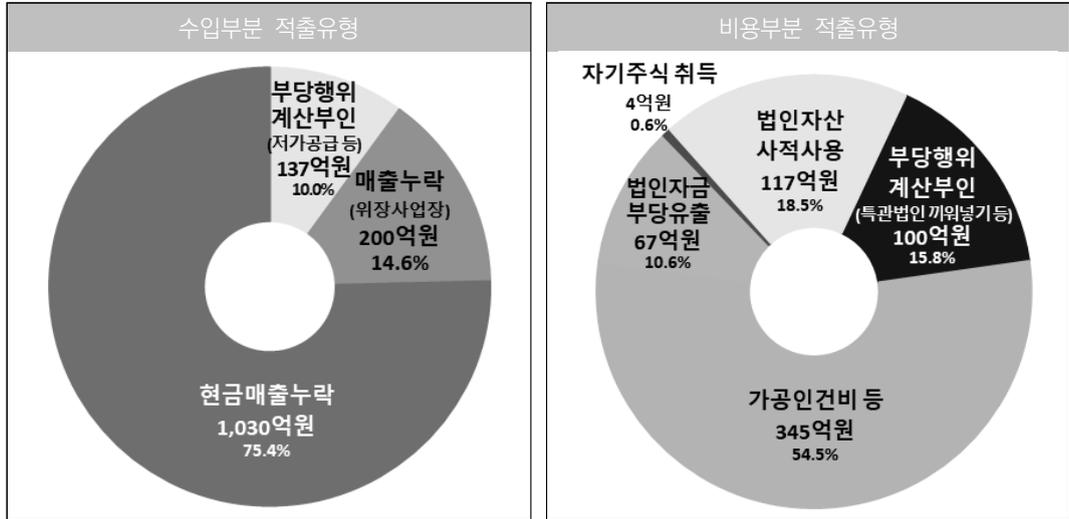
- 네 번째 유형은 관급공사, 공공기관 납품이 사업소득의 주요원천으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역토착 사업자입니다.
 - (상표권 사주명의 등록) 법인 개발 상표권을 사주명으로 등록한 뒤 법인에게 양도하여 법인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건설업체
 - (편법승계) 자녀지배 법인을 설립한 뒤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어 이익을 분여하며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한 유통업체
 - (법인자금 사주자녀 유학비 사용)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사주자녀 유학비로 사용한 제조업체

3 추진성과

- 국세청은 '19년 1회, '21년 3회에 걸쳐 신종호황 사업자 220명을 조사하였으며 매출누락 등 3,266억 원을 적출하고, 1,414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 1,030억 원(75.4%), 위장사업장을 통한 매출누락 200억 원(14.6%), 저가공급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37억 원(10.0%) 순이며,
 - 비용부분에서는 가공인건비 계상 등 345억 원(54.5%), 법인자산 사적사용 117억 원(18.5%), 특관법인 끼워넣기 등 부당행위 계산부인 100억 원(15.8%), 법인자금 부당유출

67억 원(10.6%) 순입니다.

- 조사대상자들은 부동산 7,877억 원, 자동차·회원권 123억 원 등 총 8천억 원의 재산을 형성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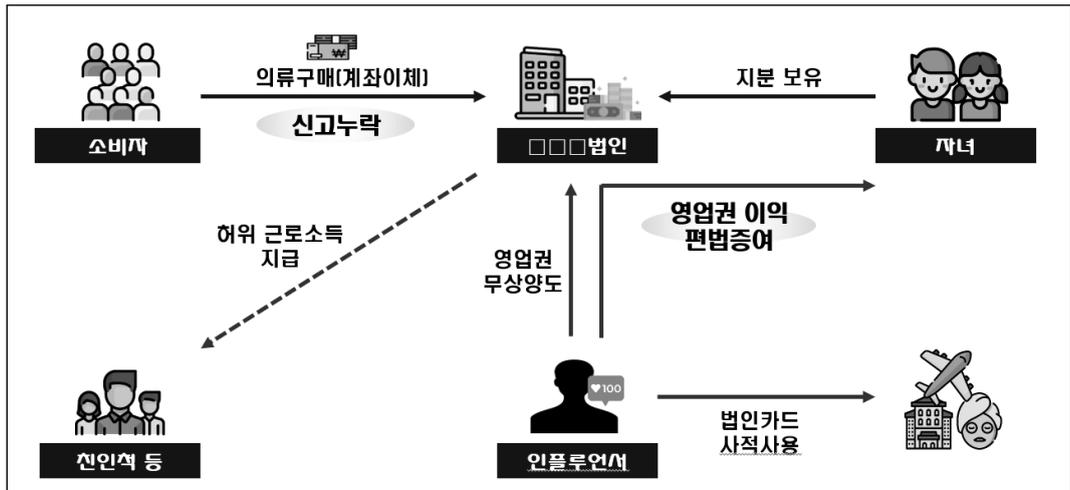
- 또한, 지난해 지역사회에서 인허가 사업을 독점하며 폭리를 취하는 불법·불공정 탈세혐의자 29명에 대해 조사하여 383억 원을 적출하고, 189억 원의 세금을 추징하였습니다.
 - 주요 소득적출 유형은 수입부분에서 현금매출누락이 263억 원(96%), 비용부분은 가공인건비가 66억 원(60%) 적출되었습니다.

4 향후 업무방향

-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향유하면서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일부 연예인, 유투버, 인플루언서, 지역토착 사업자의 탈세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검증하겠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적법절차 준수, 예측가능성 제고, 조사부담 축소』라는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 위법 및 불공정 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누리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적법·공정 과세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정과 준법의 가치』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례 1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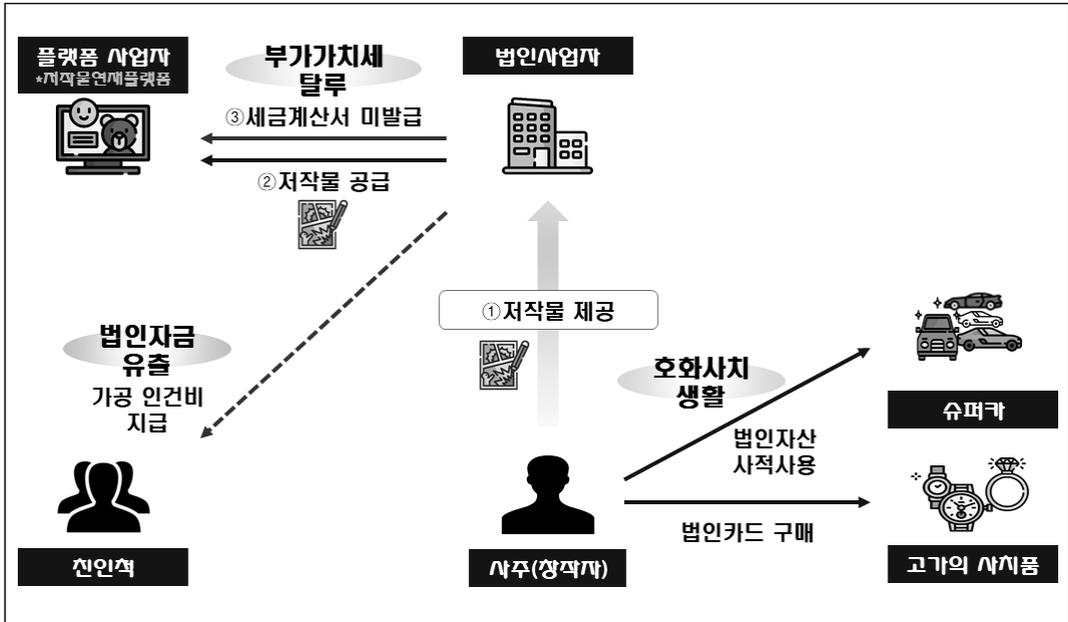
- 인플루언서 □□□은 한정 판매하는 인기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계좌이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서 영업권을 당해 법인에 무상 이전하고, 법인 주식은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영업권을 편법 증여
 - 실제 근무하지 않는 친인척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등 허위 비용을 계상하여 법인세 탈루
- 탈루한 소득으로 고급 주택을 취득하고 법인카드를 해외여행, 피부관리, 자녀교육 등에 사적으로 사용

□ 조사 방향

⇨ 현금매출 신고 누락, 영업권 편법 증여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2

웹툰 연재를 면세 신고하여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사치품을 구매하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웹툰 작가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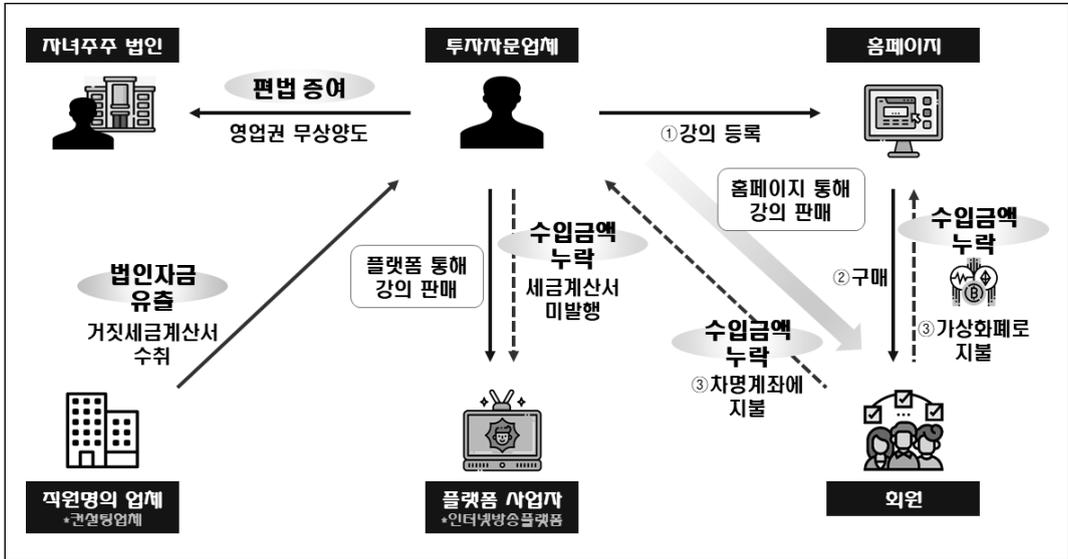
- □□□는 인터넷에 저작물을 연재하며 인기를 얻은 작가가 설립한 법인으로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
- 또한,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
- 사주는 법인명의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조사 방향

⇨ 부가가치세 누락, 법인자금 유출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3

동영상 강의를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자녀 법인에 유튜브 채널을 무상 이전한 유명 주식 유튜버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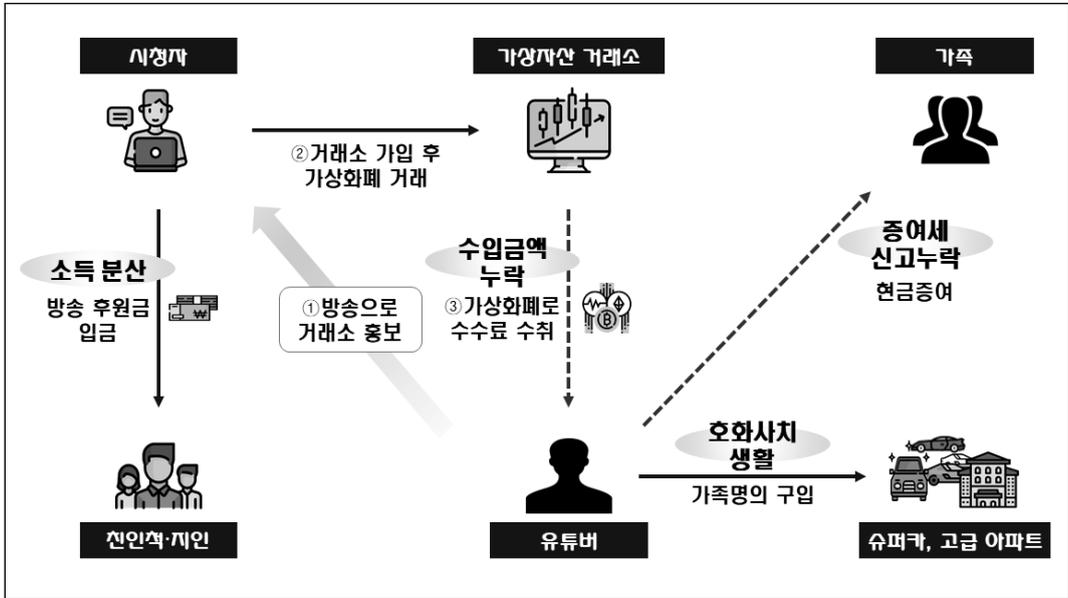
- □□□는 유명 주식 유튜버 A가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체로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 판매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 또는 가상화폐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한 강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 직원명의로 십여 개의 경영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외주용역비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탈루
- 또한, 사주는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가입자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

□ 조사 방향

⇨ 현금수입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4

가상자산 거래소 홍보 수입을 가상자산으로 수취하여 신고 누락하고, 방송수입금액을 직원명의로 분산한 재테크 유튜버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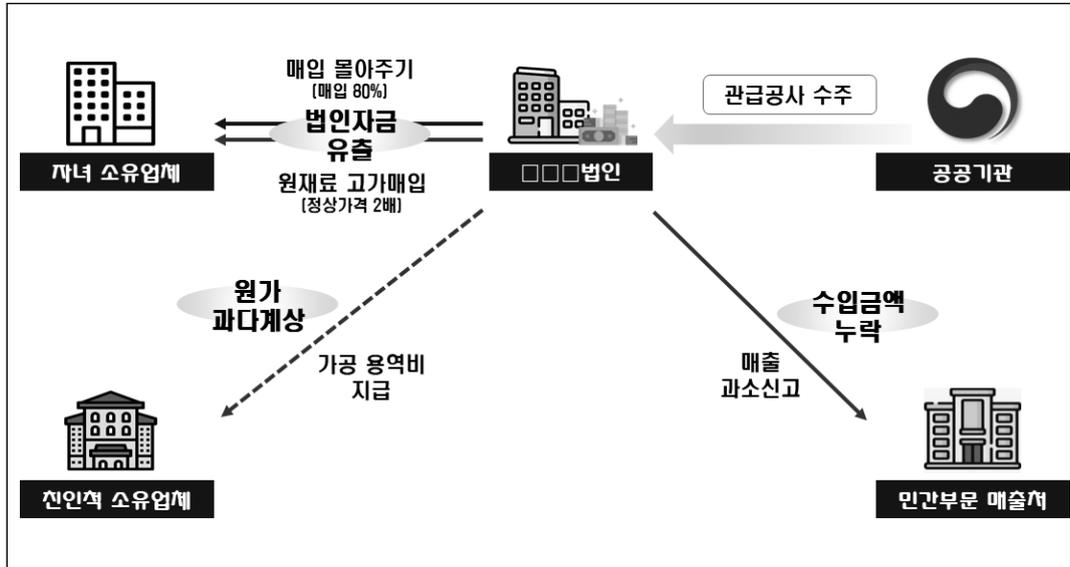
- □□□는 젊은층에게 인기가 높은 재테크 방송 전문 유튜버로
 -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여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키고 받는 추천인 수수료를 가상자산으로 수취한 뒤 신고 누락
 - 유명세를 타면서 수입이 급증하자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친인척·직원 명의로 수취하여 소득 분산
- 또한, 가족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면서 증여세는 신고 누락하고,
 -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 부동산과 슈퍼카를 가족명의로 구입하는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증여세누락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5

민간수주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가족소유 기업에 원재료비 과다지급, 용역비 허위지급한 관급공사 전문 지역토착 건설업체



□ 주요 탈루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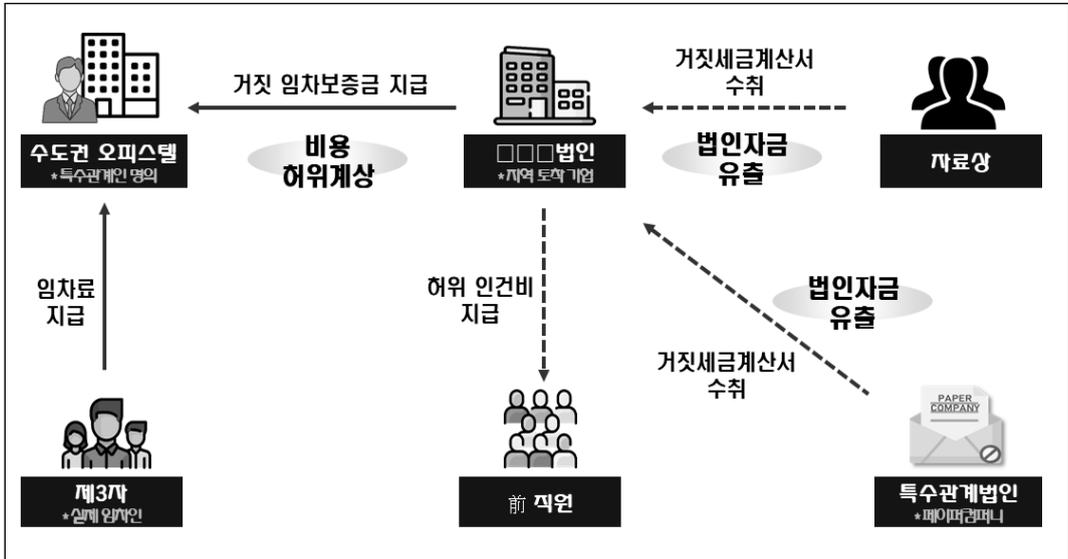
- □□□는 △△지역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대규모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도
 - 민간수주는 관급공사에 비해 매출과약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소규모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 누락
- 원재료의 80% 이상을 자녀가 대표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정상 단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매입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 친인척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은 용역을 제공할 설비가 없음에도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꾸며 소득을 탈루

□ 조사 방향

⇨ 매출누락, 원가 과다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6

부동산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유출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지역토착 용역공급업체



□ 주요 탈루혐의

- □□□는 지역 내 영향력을 통해 대기업에 용역을 지속 공급하는 등 안정적 수익을 올리는 용역공급업체로,
 - 제3자가 임차하고 있는 직원·주주 명의의 수도권 소재 부동산을 당해 법인이 사업상 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고, 시가보다 고가의 임차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 유출
- 사업장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다수 설립하여 가공의 내부거래를 만들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자료상으로부터 용역을 지급받은 바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 이미 퇴사하여 타지방에 거주하는 퇴직 직원 등의 인건비를 허위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탈루

□ 조사 방향

⇒ 허위 비용계상,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 등 엄정 조사

부당행위계산부인 - 특수관계인의 범위 -

- 국세청, 2023. 2

"특수관계인" 이란 「법인세법」 제2조 제12호에서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	영향력 행사자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와 그 친족
제2호	비소액 주주 등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 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제3호	임원·직원·생계유지자,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함)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제4호	지배적인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5호	영향력 행사자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제6호	2차 출자 법인·개인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제7호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자로 한정하여 법령해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되어야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2004.7.2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 관계가 없는 A재단법인과 B법인 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A재단의 출연자 및 C지주회사가 자회사인 B법인을 통하여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이사가 아닌 명예회장, 회장 등)도 포함된다.

상법 제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지시하거나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제399조, 제401조, 제403조 및 제406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이사"로 본다.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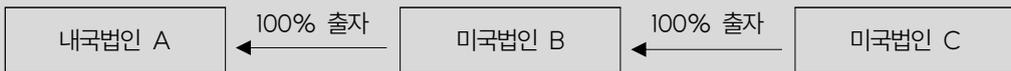
다만, 법인이 자신의 소유주식 전부를 양도하고 임원직에서 퇴임한 전임회장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지 아니하고 경영자문 등을 위한 고문으로 위촉하여 계약을 한 경우로서 해당 계약이 고용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며, 비상근 고문으로서 임원의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함이 없이 경영자문의 역할만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문은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서면2팀-1634, 2005.10.11.).

한편,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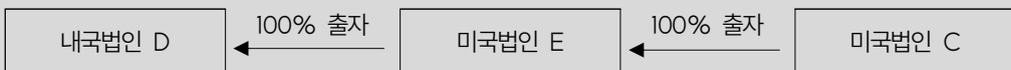
예규 - 재법인 46012-13, 2002.1.18.

[사실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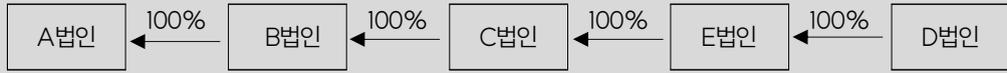
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다.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을 말하며, "「국세기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이란 해당 주주 등과 다음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① 6촌 이내 혈족
- ② 4촌 이내의 인척
- ③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④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1) 6촌 이내 혈족

혈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연혈족은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이는 어느 한 당사자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쪽 혈연으로 이어진 부계혈족과 어머니 쪽 혈연으로 이어진 모계혈족으로 나뉜다. 법정혈족은 혈연관계는 없지만 법률상 혈족으로 의제되는 혈족을 말한다.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도 구분되는바, 직계혈족은 친족 관계에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혈연이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손녀 등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계통을 직계라 하고, 이러한 직계 관계에 있는 혈족을 말하며, 방계혈족은 시조가 같은 혈족 중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혈족으로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말한다(「민법」 제768조).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나뉘는데, 직계존속은 본인의 부모나 조부모 등 자신보다 향렬이 높은 직계혈족을 말하고, 직계비속은 자기의 자녀, 손자, 손녀 등 자신보다 향렬이 낮



은 직계혈족을 말한다.

(2) 4촌 이내의 인척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하며(「민법」 제769조),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하되(「민법」 제775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로서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는 사망한 배우자와 관련된 인척관계는 종료된다(같은 조 제2항).

인척의 촌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를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민법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혼인에 의하여 남녀는 배우자가 된다. 민법상 혼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혼인 의사의 합치를 비롯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형식적 요건으로서 「가족관계 등록법」에 따른 혼인신고가 필요하다.

혼인으로 인하여 배우자는 친족이 되며(「민법」 제777조), 이로 인하여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 혼인의사 없이 어떤 방편을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장 혼인으로 보아 혼인을 무효로 볼 수 있다(대법원 96도2049, 1996.11.12.).

종전에는 결혼한 여성의 경우 남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하였으나, 2012년 2월 2일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 해당 규정(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단서)을 삭제하여 현재는 본인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친족관계를 판단한다.

한편,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당사자의 배우자에 한하는 것이므로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예규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939, 2017.3.8.

혈족의 사실혼 배우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친생자"란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를 말한다. 친생자는 혼인한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하지 않은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눌 수 있다.

「민법」에서는 친양자 입양의 경우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 보며(「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된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다만, 친양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한다(「민법」 제908조의7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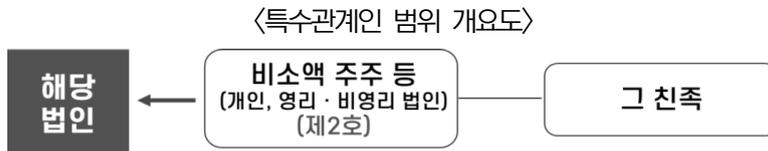
한편, 「국세기본법」에서는 「민법」에서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을 특수관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친족별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구분	이유	특수관계여부
며느리	1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1촌 인척에 해당	여
배우자의 숙모	배우자의 3촌 혈족의 배우자로 3촌 인척에 해당	여
배우자의 조카	배우자의 3촌 혈족으로 3촌 인척에 해당	여
배우자의 외조부모	배우자의 2촌 혈족으로 2촌 인척에 해당	여
대고모의 남편	4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4촌 인척에 해당	여
며느리의 부모(사돈)	인척의 개념인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및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에 미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특수관계인에는 포함	부
사촌조카 배우자	5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5촌 인척에 해당	부
당숙모	5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5촌 인척에 해당	부
외사촌조카 배우자	5촌 혈족의 배우자로서 5촌 인척에 해당	부

2. 비소액주주 등과 그 친족

소액주주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지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며, 기존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 이상을 취득하는 때부터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가. 개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 주주 등이란 거주자, 비거주자, 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관계없이 모든 주주와 출자자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이하 "비소액주주 등" 이라 한다)을 말한다.



나. 소액주주 등의 범위

"소액주주 등"이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을 말하며, 해당 법인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인 자는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 제2항).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기주식 등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한다.

예규 - 법인세과-826, 2010.8.30.

【질의내용】

상장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아닌 주주 A, B, C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각각 1% 미만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배주주 등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 등을 판단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하는 것인지

【회신】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한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소액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 또는 출자자 개인별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예규 - 재법인-230, 2003.12.22.

【질의내용】

특수관계자 판단시 적용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 대하여 질의함

〈답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함

(이유)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소유지분율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판정하는 것은 법인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특수관계자를 결정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자에서 제외되는 소액주주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므로(국조령 제2조, 소령 제40조 및 법인 22601-1149, 1989.1.18.) 소액주주 이외의 경우에도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발행주식총수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됨

(이유) 「법인세법」에서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고 단순히 발행주식총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로 보아야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을 함에 있어 확대 해석하는 것이므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답설〉이 타당함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소액주주 등이 그 후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 이상을 취득하는 때부터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한편, "지배주주 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을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7항).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8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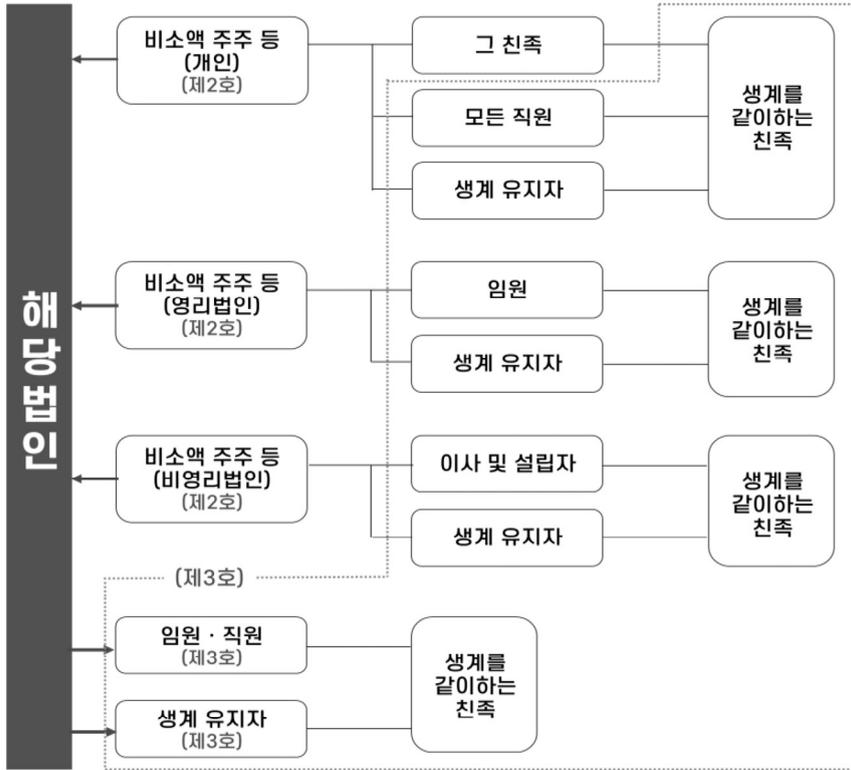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구 분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해당 주주 등이 개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기본법」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 :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 직계비속 ㉡ 「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해당 주주 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있는 비영리법인 ㉤ ㉢·㉣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해당 주주 등이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3. 법인의 임원·직원 및 생계유지자 등

해당 법인의 임원·직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해당 법인의 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는 그 영리법인의 임원,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이들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등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가. 개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① 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비소액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 ②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임원 및 직원의 개념

"임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 ①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 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②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③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④ 감사, ⑤ 그 밖에 ① ~ ④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직원"이란 해당 법인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임원이 아닌 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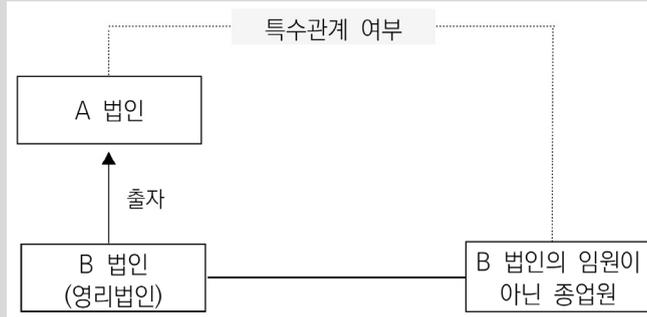
업원을 말한다.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이란 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비영리법인의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예규 - 법인46012-107, 1997.1.14.

【질의내용】

특수관계의 범위에 법인의 임원·직원이라 규정한 바,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해당 법인에 출자한 영리법인의 종업원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는 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이 아닌 종업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다.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의 개념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 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비소액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급부를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2·1 제2항).

예규 - 법인46012-2350, 1998.8.20.

【질의내용】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보험모집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감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됨

〈을설〉 보험모집인은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보험회사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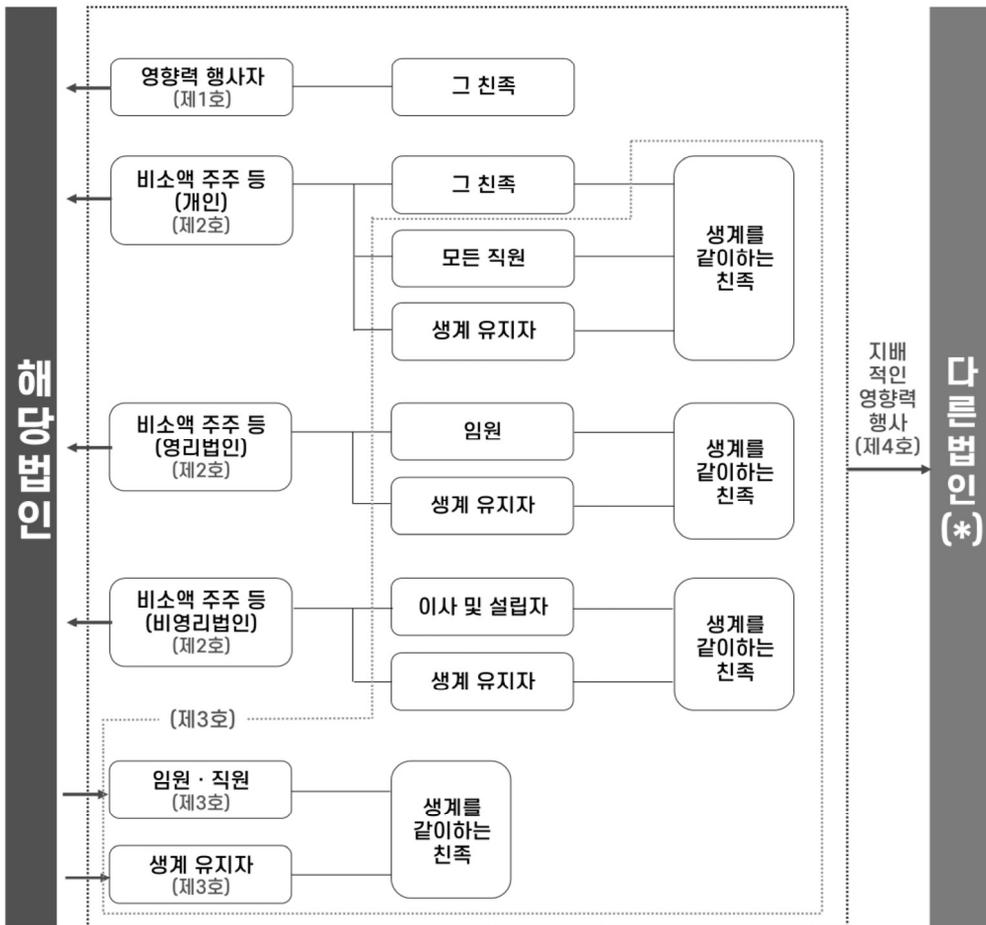
【회신】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모집수당 또는 집금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자이므로 당해 보험회사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현행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규정의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이란 법인의 임원·직원, 비소액주주 등의 직원 또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일상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친족을 말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2·1 제1항).

4.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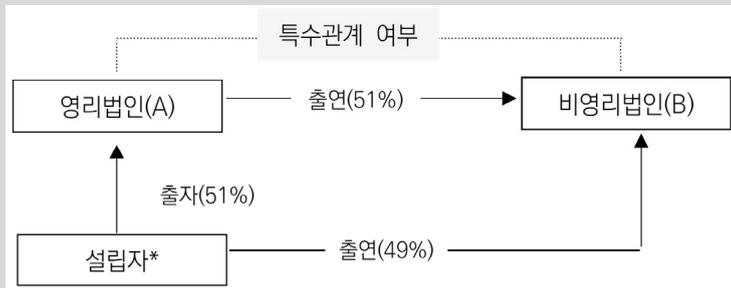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 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구 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영리법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경우 •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법인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경우

예규 - 재법인46012-85, 2002.4.25.

【질의내용】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여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을 설립하는 경우 A와 B의 특수관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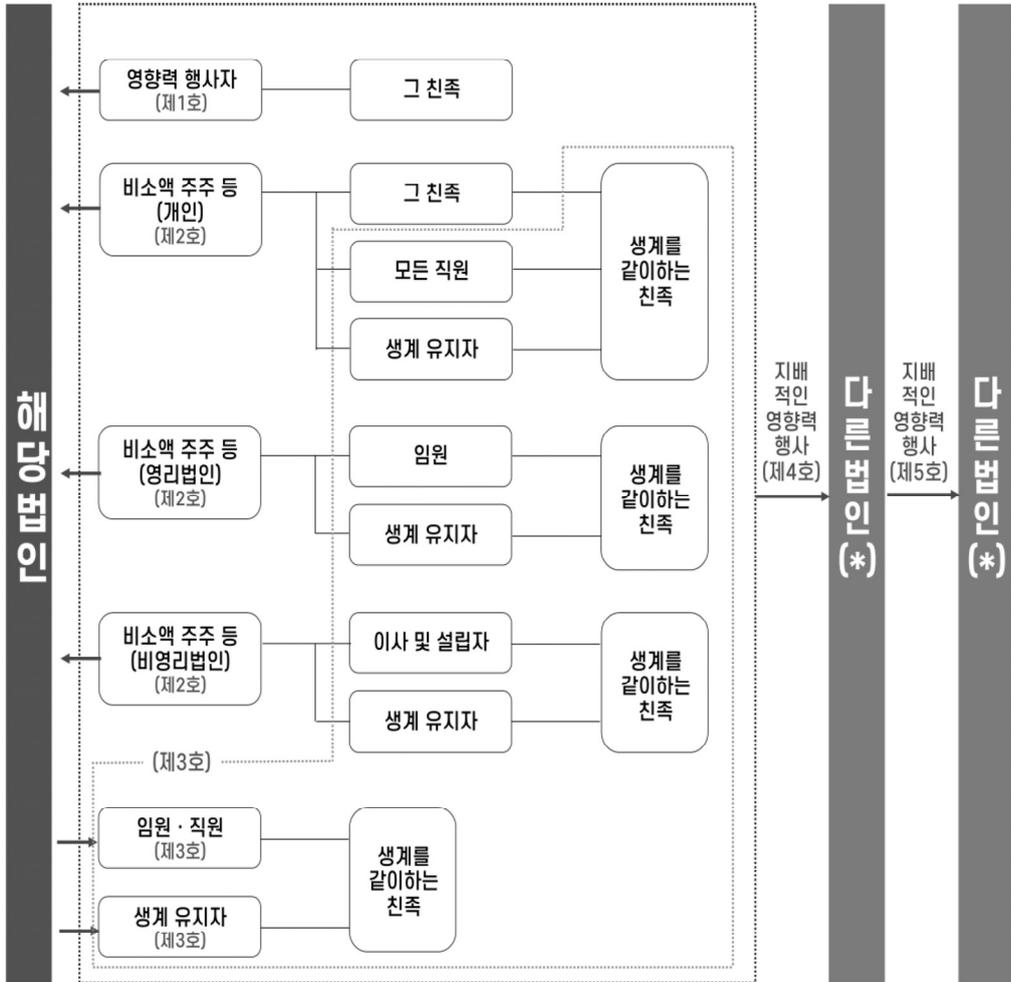
* 설립자 : 영리법인(A)의 주주임원이며 비영리법인(B)의 이사장임

【회신】

'영리법인(A)'이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A의 임원 등이 그 잔여출연금(50% 미만)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B)'의 경우, A와 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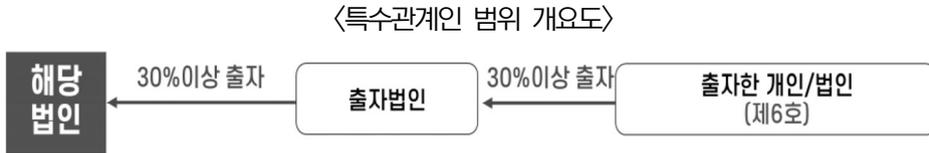
5.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자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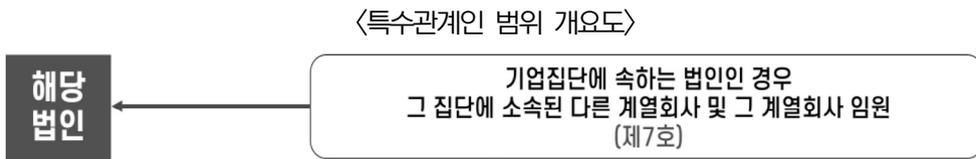
* 다른 법인에는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포함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6. 2차 출자 법인·개인 :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해당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7. 기업집단 계열회사 및 임원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예규 - 서면-2017-법인-1473, 2017.8.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과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의 임원'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시행

- 국세청, 2023. 1

-
- (추진 배경)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어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이와 관련하여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합니다.
-
- (제도 개요)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
 - (상담내용)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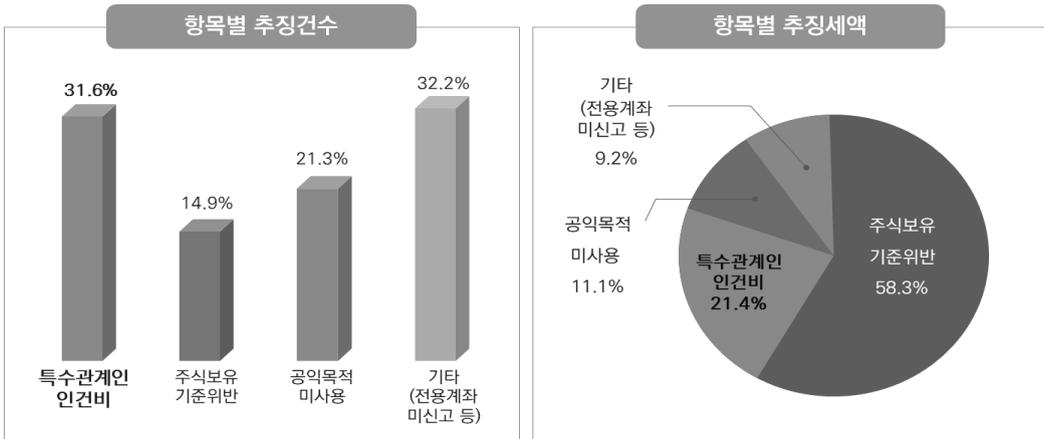
1 추진 배경

□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48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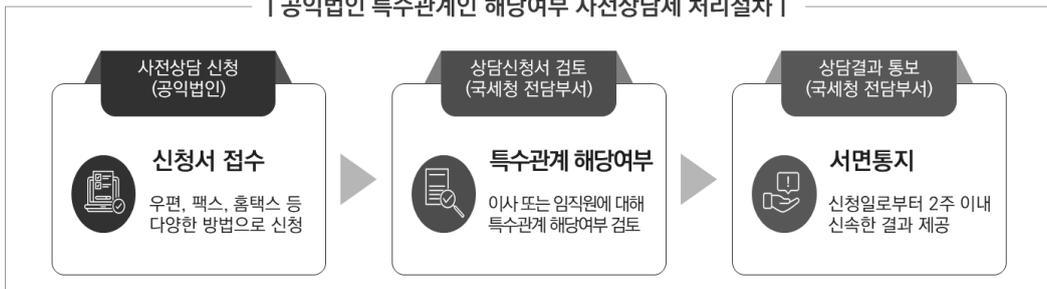
-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어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세법을 위반한 추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하여 공익법인이 이어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항목별 추정건수·추정세액 비율 |



2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주요내용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처리절차 |





- (신청 대상) 이어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상담 주관) 공익법인의 상담 신청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상담 업무를 실시합니다.
- (결과 통지)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제도 혜택) 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붙임 1 -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제한규정(상증법 §48⑧)

- 관련 규정
 - (이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
 - (임직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
- 위반시 제재사항
 - (가산세) 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78⑥)
 - *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늦게 취임한 이사 분부터,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 분부터 부과
 - (과세 제외)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

과 제외(상증령 § 80⑩)

《임직원에 대한 연도별 가산세 면제 대상》

2000.1.1. 이후	2003.1.1. 이후	2008.2.22. 이후	2021.2.17.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 ② 학교의 교사 ③ 고아원·탁아소의 부모 ④ 도서관의 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 ② 학교의 교사 ③ 고아원·탁아소의 부모 ④ 도서관의 사서 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 ② 학교의 교직원 ③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④ 도서관의 사서 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⑥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의사 ② 학교의 교직원 ③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④ 도서관의 사서 ⑤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⑥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⑦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붙임 2 - 예상 질문 및 답변

① 사전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됩니다.

②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어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이사에 대해 2023년 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상담할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 2023년 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

④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사전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전상담은 언제 신청하나요?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